

■ 법률 칼럼

최근 이민 소식

■ 이민 소식

1. 이민 적체가 심각합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서 심사 기간도 14~32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허가증 속도 여전히 적체를 보이고 있습니다(부분적 개선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 경향은 아닙니다). 가족 초청 청원서의 경우도 과거에는 3~6개월 정도 소요되었으나 최근에는 1년까지 걸리고 있어서 고국에 계신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2. 8월 영주권 문호: 지난 7월과 마찬가지로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의 영주권 케이스는 8월에도 오픈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영주권자가 결혼을 하는 경우 그 배우자 분들은 영주권 청원서(I-130)와 신청서(I-485)를 모두 동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미성년자녀도 대기 기간 없이 바로 영주권 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서를 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배우자 그리고 영주권자 미성년 자녀들은 접수를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업 3순위 학사/숙련공도 오픈 상태를 유지하여 폼이 승인되면 바로 영주권 청원서(I-140)와 영주권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비숙련직의 경우는 승인 가능한 우선일자가 2019년5월8일로 후퇴한 상태를 지난 7월과 마찬가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3.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영주권 신청 시에 급행서비스 (Premium Processing)가 시작됩니다. 2022년 8월1일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다만 2021년 8월21일 또는 그 이전에 접수된 I-140에 대하여만 급행서비스 upgrade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로 I-140을 접수하시는 분들에게는 급행서비스 혜택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21세 시민권 자녀의 부모 초청

IMF 사태 이후에 미국에 입국해서 신분 유지하지 못하셨던 분들의 미국 출생 자녀가 21세가 되면서 최근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 초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고 있어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모님께서 Legal Entry with Inspection 이민과 세관을 거친 입국-합법입국을 하셨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시민권자의 부모는 직계가족이기 때문에 합법적 입국을 하셨으면 그후에 신분을 유지 못하셨더라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밀입국하신 경우에는 601A 면제를 통해서 한국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21세 시민권 자녀가 미군에 복무 중인 경우는 밀입국을 하셨더라도 미국 내에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지난주 컬럼을 참고하십시오). 또는 245i 해당자가 되셔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합법 입국을 하셨다면 입국 시 사용하신 여권과 비자 그리고 출입국기록카드(I-94)를 가지고 계신지 점검하십시오.

2. 시민권 자녀의 재정 보증 능력: 자녀가 막 21세가 된 경우에는 아직 학생일 경우가 많고 사회생활 초년이라 재정보증 능력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인을 찾으셔야 합니다.

3. 범죄기록 여부: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특히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영주권 취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꼭 상의하셔야 합니다 (601 면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학생으로 체류하셨던 적이 있으신 경우는 Prodee 학원 문제가 있는지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4. 필요 서류들이 모두 있는지 점검: I-94, 그리고 자녀의 출생증명서 등.

Law Offices of Joseph KW Cho
친권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치과 칼럼

임플란트 즉시 식립술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자니 어감이 이상하기는 합니다만 임플란트 즉시 식립 (immediate implant placement)이라는 말은 치아를 발치한 후에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술식을 말합니다. 임플란트 치료의 일반적인 단계는 치아를 발치한 후 발치한 부위가 치유된 후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즉 발치와의 치유를 통해 임플란트를 지지할만한 뼈가 생성된 후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기본적인 임플란트 식립법입니다.

임플란트 치료 기간이 짧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연구하다 나온 술식이 즉시 임플란트 식립술입니다. 보통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 발치와가 치유되는 기간은 약 3~6개월 정도입니다. 임플란트를 바로 심게 되면 바로 이 기간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임플란트 즉시 식립 이유가 치아 발치 후 발생할 수 있는 잇몸과 뼈 조직의 변화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치아를 발치하게 되면 치아를 둘러싸고 있던 잇몸과 뼈의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에 조직의 재형성 (remodeling) 과정을 통해 모양이 변하게 됩니다. 임플란트를 바로 식립하게 되면 임플란트가 치아를 뺀 부위에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변화의 양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좋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임플란트 즉시 식립술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임플란트를 발치 후 바로 심으려면 발치한 부위에 어느 정도의 뼈가 있어서 임플란트가 단단히 유지될 수 있어야 합니다. 발치와의 아래에 있는 뼈를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고정하기 때문에 이 부위의 뼈의 양이 제한적인 경우는 임플란트 즉시 식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뼈의 양이 제한적이라는 말은 보통 발치해야 할 치아 아래에 상악동이나 신경관 등 기타 중요한 해부학적인 구조물들이 있어서 임플란트를 바로 식립하기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mm의 뼈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해부학적인 구조물로부터 2mm의 안전 공간을 확보해하기 때문에 최소한 5mm의 이용 가능한 뼈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고려사항은 연조직의 양입니다. 일

반적으로 치아의 직경이 임플란트의 직경보다 크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의 가용한 연조직의 양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즉 임플란트를 심고 임플란트와 발치와의 뼈 사이 공간에 뼈이식을 해야 합니다. 이 뼈이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뼈 이식재가 잘 고정되고 보호되어 뼈를 생성하기 위해 필요한 혈관과 세포 그리고 기타 조직들이 자라 들어 오도록 해야 합니다. 이 역할을 주로 하는 것이 잇몸인데 발치 후 임플란트를 바로 심게 되면 이 연조직의 양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뼈 이식 외에 연조직 이식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경우에 이 연조직 이식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발치와의 크기가 임플란트에 비해서 너무 큰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어금니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연조직의 양이 아주 많이 모자라는 경우는 발치와가 치유되는 기간을 충분히 두어서 뼈 조직 외에 잇몸 조직도 치유된 후 임플란트를 심는 게 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발치와 하반에 뼈의 양이 충분하데 발치와의 크기가 임플란트 크기보다 아주 큰 경우 일반적인 뼈 이식 술식을 병행하여 임플란트를 심기도 합니다. 발치와의 조직을 충분히 유지하기 위해서 발치와에 임플란트 식립 없이 뼈 이식을 하기도 하는데 이 술식을 병합하여 임플란트 즉시 식립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즉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 뼈 이식을 하고 그 위에 흡수성 막으로 발치와 뼈 이식재와 임플란트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임플란트가 심기는 깊이입니다. 발치 후 바로 임플란트를 심더라도 발치와의 상부 조직은 재형성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즉 혈액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조직들은 흡수되어 상실되는데 이 결과로 발치와 상부가 조금 내려 앉게 됩니다. 이 양을 고려하여 임플란트를 심어야 나중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한 후 결정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겠습니다.

YON DENTAL GROUP
Gene H. Park DDS, MS
한인 치주 임플란트 수술 전문의

Garden Grove Office: (714) 530-1948
Fullerton Office: (714) 519-3932



프리미어 공인세무 그룹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예약 후 방문
상담 가능

PREMIER TAX GROUP (714)530-2033

8942 Garden Grove Blvd. #203, Garden Grove, CA 92844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

info@isemusa.com
taxcapital@gmail.com